#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
의 안 번 호 368 발의연월일 : 2008년 7월 2일

발 의 자: 곽영교의원외 8인

# 1. 주 문

- 대전광역시의회 "예산결산특별위원회"를 구성한다.
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7인으로 하며,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시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# 2. 제안이유

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·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세입·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08년도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및 제72조의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검토하기 위하여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함.

## 3.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 제66조
-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
-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및 제72조

#### 지 방 자 치 법

**제66조** (의안의 발의) ①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

- ②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.
- ③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##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

제7조(특별위원회) ①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의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- ②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- ④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

제9조(위원의 선임) ①상임위원회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
②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.

###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

제68조(예산안 심의) ①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.

-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(이하 "예결 위원회"라 한다)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.
- ③의장은 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제72조(결산의 심사)①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.

-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케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.
- ③의장이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8조 제3항을 준용한다.

# 찬성의원명단

찬 성 의 원	서 명	비고
对对是.	Mobil	
The NA	an	
7-1 118 119	Zovon	
对包2	THE	
or Fig	my mmo	
7 2 2 3 2 2H 79	The 3/3	
ट्रे रभ ७९	7 mm fort	
2 3 3cm	主物人	
\$ 2H &	6 to	